

드림숲 요양원 급여 이용 안내

적용일 : 2026.01.01

1. 운영규정의 개요

기관명	드림숲요양원	설치일자	2022.09.01
대표자	김 소 정	급여종류	시설급여
주소	인천 서구 단봉로 183, 드림숲요양원	협력의료기관	SB나눔제일의원

	수급자를 장기간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·향상을 위한 교육·훈련 등을 제공.
특별보호	이용자를 격리하거나 억제대 등을 사용하여 신체를 제한하는 특별한 보호를 해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한적으로 특별한 보호를 할 수 있다.
배상책임	직원의 고의나 중과실로 서비스 제공 중에 입소자의 생명, 신체,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이를 배상 한다. 다만, 제3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 및 센터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.
입소계약	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1,2등급(3,4,5등급은 시설급여 판정)으로 판정을 받은 후 장기요양 인정서류를 첨부하여 드림숲요양원의 입소 절차에 따라 입소
계약기간	계약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,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.
계약해지	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.
의료이용절차	입소자가 질병이나 부상을 경우 또는 시설이 정한 의사의 진단에 의해 치료를 필요로 하는 때는 약물치료의 요양 또는 물리치료 등 시설 자체에서 가능한 치료는 시설장의 책임 하에 실시하기로 하고, 중환자 또는 수술을 요하는 질환일 경우는 입소자 및 신원인수인과의 상담을 통해 신원인수인의 책임 하에 시설의 지정병원 또는 각자의 선택에 의한 기타 의료센터 등에서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.
시설물사용의 주의사항	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파손 및 비품 등을 망실, 훼손 했을 때는 보호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 합니다.

2. 본인부담금

시설급여 (단위:원) 요양보호사 2.1:1 배치, 일반대상자,30일기준

등급별	본인부담금	식재료비	간식비	본인부담금 합계
1	93,070원X30일X20%=558,420원	360,000원	45,000원	963,420원
2	86,340원X30일X20%=518,040원	360,000원	45,000원	923,040원
3~5	81,540원X30일X20%=489,240원	360,000원	45,000원	894,240원
등급외	77,540X30일=2,326,200원	360,000원	45,000원	2,731,200원

3.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비용

식재료비	4,000원X3식X30일=360,000원		
간식비	1일(1,500원)X30일=45,000원		
이용 시	이·미용비	무료(매 월 자원봉사자 활동 중)	
해당	상급침실이용료	1인실 1개월=150,000원 상급2인실 1개월=300,000원	

4. 시설의 규모, 설비, 배상책임보험

연면적 : 585.0㎡ 건축면적 : 1570.7㎡ 입소 정원 : 49인 배상책임보험 : 한화복지시설배상책임보험

시설현황

침실	특별침실	사무실	요양보호사실	자원봉사자실	간호사실	물리(작업)치료실
30	1	1	1	1	3	1
식당조리실	프로그램실	화장실	세면장/목욕실	세탁장/건조실	비상재해대비시설	
1	4	14	4	1	4	